

2005. 5.25 ~ 5. 28

제11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검 토 보 고

2005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 무 위 원 회

2005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05. 5. 19.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5. 19.

2.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현황

가. 세입현황(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추경요구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73,223,549	148,352,523	24,871,026	16.8
지방세수입	11,313,450	10,924,312	389,138	3.6
세외수입	16,993,187	8,302,703	8,690,484	104.7
지방교부세	93,905,401	85,501,151	8,404,250	9.8
조정교부금	3,090,000	3,400,000	△310,000	△9.1
국고보조금	31,715,685	29,959,682	1,756,003	5.9
도비보조금	16,205,826	10,264,675	5,941,151	57.9

- ◆ 제1차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248억 71백만원 증가한 1,732억원으로 세입의 증가내역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192백만원, 과년도 교부세 및 도비보조금이 1,36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8,404백만원, 국고보조금 1,756백만원, 도비보조금이 5,941백만원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음.

나. 일반회계(세출)

(단위:천원)

실과별	추경요구액	당초 예산액	증감	증감률
계	173,223,549	148,352,523	24,871,026	16.7
총무위원회소관	93,903,877	83,541,154	10,362,723	12.4
기획감사실	5,173,341	4,533,974	639,367	14.1
읍면	7,572,774	6,412,058	1,160,716	15.3
종합민원실	481,903	462,839	19,064	4.1
행정과	35,059,270	34,633,602	425,668	1.2
자치지원과	2,325,650	1,775,500	550,150	31.0
재무과	3,973,959	2,913,993	1,059,966	36.4
사회복지과	20,690,260	18,998,950	1,691,310	8.9
문화관광과	13,083,658	9,547,042	3,536,616	37.0
보건소	3,776,889	2,658,728	1,118,161	42.1
문화센터	1,216,021	1,072,879	143,142	13.3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	640,375	640,375	0	-
수송대관리사무소	550,589	531,589	19,000	3.5
산업건설위원회소관	77,958,871	63,450,568	14,508,303	22.9

- ◆세출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전체의 54.2%를 점유한 것으로 전체증가율 16.7%보다 다소 낮게 증가되었음.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성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16.9%인 292억원, 경상적경비가 9.7%인 168억원, 사업예산이 70.4%인 1,219억원,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이 3%인 5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1회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이 당초예산보다 230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체증가액중 사업예산이 92.6%를 점유하고 있음.

다. 특별회계(세입·세출)

(단위:천원)

실과별	추경요구액	당초예산액	증감	증감률
계	11,247,707	8,433,367	2,691,340	31.9
총무위원회소관	635,788	651,799	△16,011	△2.5
의료보호기금	336,010	347,799	△11,789	△3.4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299,778	304,000	△4,222	△1.4
산업건설위원회	10,488,919	7,781,568	2,707,351	34.8

《 기획감사실 소관 》

구 분	추경요구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세출(일반회계)	5,173,341	4,533,974	639,367	14.1

◆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 6,192,058천원(p34)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은 적기적소에 집행되도록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함에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당초예산액 40억원보다 1.5배인 62억원을 누락하여 계상한 것은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사업시기의 일실등으로 매년 많은 규모의 예산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어 익년도 업무추진에 누증요인이 되어 행정수요가 낭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일반수용비 군 홍보 달력제작비 40,000천원(p65)

홍보관련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 거창군의 자연경관과 특산품을 홍보하는 2006년도 달력을 제작하는 경비로써 처음 실시하는 신규시책으로 거창군의 이미지홍보를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4천만원으로 1만부를 제작하는 달력의 경우 달력 1부당 4천원으로 품질 또는 도안에서 조잡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내년도는 시험단계이므로 부수보다도 품질위주로 부수를 줄여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 시책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9,000천원(p65)

집행계획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을 상사업비 수상 또는 일반우수기관 선정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서를 대상으로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도 전체

평가대상 업무 30개중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12개 담당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상사업비는 수상규모별로 수령액의 1.5%~1.2%로 최하 30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으로 하며,

중앙부서 평가는 1위 150만원, 2위 1백만원, 3위 80만원,

도단위 평가는 1위 80만원, 2위 50만원, 3위 30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년도 수상을 기준으로 할때 상사업비 2개부서 2억6천만원 (350만원 소요),

중앙평가 1위1개부서, 2위1개부서, 3위3개부서(590만원 소요)

도단위 1위3개부서, 2위2개부서, 3위3개부서(430만원 소요)로서

상사업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일반평가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과 지급금액규모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시책개발 우수부서(직원) 포상금으로 기존예산 660만원 확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부서평가를 실시 우수부서를 선정 종합시상하는 제도 필요

《 종합민원실 소관 》

구 분	추경요구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세출(일반회계)	481,903	462,839	19,064	4.1

◆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 행정과 소관 》

구 분	추경요구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세출(일반회계)	35,059,270	34,633,602	425,668	1.2

◆ 새마을운동추진 우수마을 상 사업비 80,000천원(p104)

현재의 새마을운동은 민간자체적인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운동으로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11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항임에도 계속하여 새마을 운동에 대하여 우수마을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감시 시스템 설치비 60,000천원(p106)

농축산물 도난예방을 위하여 거창군내 주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방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열거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서 국가에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나 주민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내 거제, 창녕, 합천 등 일부 시군과 타시도에서도 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설치대상지는 5개소이나 현재까지는 위치는 설정되지 않았으며,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설설치후 경찰서에 시설물을 이관할 예정임. (거창경찰서에서는 의회와의 간담회시 15개소에 CCTV설치(3억원)를 요청하였음)

《 자치지원과 소관 》

구 분	추경요구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세출(일반회계)	2,325,650	1,775,500	550,150	31.0

◆ 장학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 200,000천원(p112)

거창군은 평생교육도시로써 지역내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교육도시로의 위상정립과 지역 인재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재 장학재단의 구체적인 설립계획과 별도 의회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거규정 없이 예산편상한 것이므로 향후 장학재단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조례제정 등의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 거창전문대 육성지원 100,000천원,

기능대 체육시설 지원 50,000천원, 학교시설 70,000천원(p112)

교육분야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나 지역내 교육발전을 위하여 매년 일정규모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임.

거창전문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교육도시로의 육성을 위하여 도에서 설립한 것으로 거창지역의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대학들의 통폐합 추세에 맞추어 남해전문대학과의 통합도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거창전문대학이 남해전문대학보다 유리한 점을 선점하여 우수학과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2005년도 남해군 지원예산액 130,000천원)

거창기능대학은 정부(노동부)에서 모든예산을 지원하는 정부출연대학으로 정부에서 통폐합이 추진되는 과정(상반기중 결정)으로 거창기능대학의 경우는 타 지역학교로 통합되는 대신 순수한 기능인력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예산을 승인하더라도 기능대학 통폐합후 지원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무과 소관 》

구 분	추경요구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세출(일반회계)	3,973,959	2,913,993	1,059,966	36.4

◆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사회복지과 소관 》

구 분	추경요구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반회계	20,690,260	18,998,950	1,691,310	8.9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	299,788	304,000	△4,222	△1.4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7,000천원(p127)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거 조례로 구성 운영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임.(제정 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되어 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10~20인, 실무협의체 10~20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시 참석수당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

◆ 경로당 신축사업 490,000천원(p135)

도비보조사업 2개소와 자체지원사업 7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예산으로 경로당의 경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만을 지원하며, 회원수를 감안하여 차등시설을 적용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되는 평당 건축비 2백만원으로는 부족하여 일부는 주민 자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확대지원이 필요성이 제기됨.

- 최하 4천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음.

(마리면 풍계경로당에는 건축비가 부족하여 추경예산에 1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음)

◆ 실버문화축제 40,000천원(p135)

노인이 직접참여하는 행사를 위하여 10월 하순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77백만원중 추가소요액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휘호대회, 장기바둑대회, 게이트볼대회, 노인 건강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군수공약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려는 것임.

그러나 거창지역 노인들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10월말에 실시할 경우 농번기로 인하여 참여율이 저조하여 일부 계층의 노인행사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 개최시기가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관광과 소관 》

구분	추경요구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세출(일반회계)	13,083,658	9,547,042	3,536,616	37.0
수승대 관리	550,589	531,589	19,000	3.6

◆ 문화관광해설사 안내복 구입 1,000천원 (p147)

수승대와 거창사건묘역사업소의 관광안내를 위하여 기 임명된 관광해설사 5명(문화원1, 퇴직교사1, 주부3)에 대하여 통일된 복장을 위한 피복비로써 예산과목이 공보관리로 된 것은 부적절한 것임(주택·지역개발 - 관광진흥관리가 되어야 함)

◆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500,000천원(p150)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부지매입은 전액 균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2004. 12. 1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한 사항임.
(장팔리 산9-1 전 2,030m², 산5-1 임야 5,851m²)

◆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연지원비 10,000천원(p151)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거창삼베일소리 보존 전승지원사업비로 당초예산에 상하반기 예산으로 15,000천원을 승인하였음에도 추가로 10,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전년도 지원수준(15,000천원)에 비하여도 다소 과다지원인 것으로 검토되며, 동 무형문화재는 도지정 무형문화재이므로 향후 도비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랑티켓 운영지원 15,000천원(p135)

연극축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랑티켓제도와 병행하여 6천매(매당 2,500원)를 추가지원(당초예산액 5천만원)하려는 것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국제연극제 기반확충 및 주차장 확장사업 180,000천원(p155)

국제연극제 개최에 따른 주차장조성 부지매입비로써 소요사업비는 3억5천만원으로써 기 확보된 도비(5억원) 일부와 합쳐 부지매입에 사용하려는 것임.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동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창 수승대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의제처리 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후 예산을 편성하여 하나 현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사항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당초 계획에 비하여 변경결정 지연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됨)

《 보건소 소관 》

구분	추경요구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반회계	3,776,889	2,658,728	1,118,161	42.1
의료보호 특별	336,010	347,799	△11,789	△3.4

◆ 고제보건지소 신축공사 753,717천원 (p163)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의 매입 또는 건물의 신·증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음.

고제보건소는 현 위치에서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전 건물의 구조 및 규모와 소요예산등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것으로 검토됨.

※강천보건지료소는 제113회 임시회(2004.9.14)에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였음.

《 문화센터 소관 》

구분	추경요구액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반회계	1,216,021	1,072,879	143,142	13.3

◆ 연극 다시라기 자체 기획제작 83,020천원 (p168)

지방문예회관 자체기획 프로그램 공모에 우리군의 작품(다시라기) 선정되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50%는 지원금으로 편성 (추경예산서 34페이지 기타잡수입 41,510천원)

문화센터내 자체 기획전문인력이 없어 관련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야 하나 이 경우 문화센터 자체사업으로 불인정됨에 따라 우수작품 제작에는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동 작품은 작품제작 및 준비기간을 거쳐 10월~12월중 문화센터에서 공연할 예정임.